

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

할로젠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(NFPC 107A)

◇ 제·개정 이유

할로젠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소화약제 저장용기로부터 가스누설이 있는 경우 상승한 배관 내 압력을 배출하기 위하여 안전장치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

◇ 주요내용

가. 집합관에 설치되는 안전장치 설치기준 신설 (안 제6조)

나. 소화약제 설계농도 개선 (안 제7조)

다. 기동장치에 보호장치 설치 기준 마련 (안 제8조)

라. 과압배출구 기준 개선 (안 제17조)